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, 별도로 시·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위 심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신규 지구 지정 없이 잔여 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심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심의 안건 부족으로 개최 횟수도 월 1회 미만으로 그 역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서울시 도시관리의 연속성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위원회의 기능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수행할

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